

늘사랑재가 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자(갑),제공자(을)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적】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계약기간】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제3조 【급여범위】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‘갑’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4조 【급여이용 및 제공】

1. 방문요양,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2. 을은 익월 급여 제공하기전 전월 말일, 갑(또는 병)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(급여제공일정표)을 작성한 후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.
3. 심야(22시~06시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4.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』의 다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5. 『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』에 따른 “유급휴일”, 『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“근로자의 날”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50%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6. ‘4항’과 ‘5항’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‘5항’을 적용한다.

제5조 【계약자 의무】

1.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월 이용료 납부
 -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 -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④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2.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- ② 급여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 - ③ 급여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⑤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-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- ⑦ 기타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- 3.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에게 통보
- ④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- ⑤ 기타 ‘을’의 협조 요청 이행

제6조 【계약해지 요건】

- 1. ‘갑(또는 병)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‘갑’(또는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④ 기타 ‘갑’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. ‘을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② ‘갑’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③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④ ‘갑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⑥ ‘갑’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7조 【계약의 해지】

- 1. ‘갑’(또는‘병’)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2. ‘을’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과 ‘병’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8조 【이용료 납부】

- 1. ‘을’이 ‘갑’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[별지 1]
- 2. ‘을’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를 청구한다 .(우편, 문자 등)
- 3. ‘갑’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하며, 계좌이체, 현금납부등 할 수 있다. 단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4. ‘을’은 이용료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.

2024 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(원)

늘사랑재가복지센터

등 급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인지지원 등 급	본인부담률
월한도액 (원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	일반대상자: 15% 의료, 경감대상자: 9·6% 기초생활수급자: 0%

방문요양 시간별 수가

분 류	금액 (원)	분 류	금액 (원)
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
방문목욕 시간별 수가(변동없음)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4,6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 목욕)	76,34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

등급별 월한도 및 서비스 가능일

등 급		1 등급 (240분)	2 등급 (240분)	3 등급 (180분)	4 등급 (180분)	5 등급 (180분)	인지지원등급
월 한 도 액	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서비스 가능일		31 일	28 일	26 일	24 일	21 일	
서비스 금액		2,069,900	1,869,600	1,412,320	1,303,680	1,140,720	
본 인 부 담 금	일반 (15%)	310,480	280,430	211,840	195,550	171,100	
	경감 (9%)	186,290	168,260	127,100	117,330	102,660	
	경감 (6%)	124,190	112,170	84,730	78,220	68,440	
	기초수급자	100% 공단부담 (개인 무료)					